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상욱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700

발의연월일: 2024. 7. 12.

발 의 자:김상욱ㆍ서천호ㆍ백종헌

김기현 · 김선교 · 최형두

박수민 • 권성동 • 김태호

안상훈 · 조지연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「경찰공무원법」, 「소방공무원법」 등은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사람이 공무로 사망하거나 순직하였을 때 특별승진임용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, 이러한 순직자에 대한 특별승진제도는 그 공로를 인정하고 예우와 명예를 고양하기 위한 인사상 예우제도로서, 연금 등 각종 급여는 특별승진된 계급에 따라 지급되지 않아 순직자에 대한 예우가 형식적인 것에 그친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재직 중 경찰관, 소방관이 순직하여 특별승진을 한 경우에는 기준소득월액을 특별승진한 계급에 맞추어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순직자들의 희생을 기리고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강화하려는 것임 (안 제10조제1항 단서).

법률 제 호

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「경찰공무원법」 제19조제1항제2호, 「소방공무원법」 제17조(순직한 사람이 특별승진된 경우에 한정한다)에 따라 특별승진된 경우 기준소득월액은 특별승진된 계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기준소득월액 산정에 관한 적용례) 제10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조(급여액 산정의 기초) ①	제10조(급여액 산정의 기초) ①
다음 각 호의 급여의 산정은	
해당 공무원에 대한 급여의 사	
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	
「공무원연금법」 제3조제1항	
제4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(이	
하 "기준소득월액"이라 한다)을	
기초로 한다. <u><단서 신설></u>	<u>다만, 「경찰공무</u>
	원법」 제19조제1항제2호, 「소
	방공무원법」 제17조(순직한
	사람이 특별승진된 경우에 한
	정한다)에 따라 특별승진된 경
	우 기준소득월액은 특별승진된
	계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.
1. ~ 5. (생 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②・③ (생 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